

2015. 7.

바른 감사 바른 시청

맑은물사업소 감사결과



감사담당관실

<http://www.jeonju.go.kr>

맑은물사업소 감사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5. 11. ~ 5. 20. (8일간)
- 감사범위 : '13. 5월 ~ '15. 3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외 2개반 9명

□ 감사중점

- 주요 시책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실태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실태
- 상하수도 운영 및 수질관리 실태
- 상하수도 공사 전반
- 시민불편사항 및 민원처리 실태 등

□ 감사결과 : 34건 지적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계획(천원)				신 분 상 심의결과(명)		
	계	시정	주의	계	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징계
맑은물사업소	34	□	△△	□,□□	00,000	00,000	◇◇	○	○	-

주요 지적 사항

1. 자동차손해보험 책임보험자가입에 관한 사항

-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운행에 따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가입하여 차량운행에 따른 책임의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00우 △△△ 차량이 201△. 0. 0일자로 책임보험이 만료되었음에도 201△. 0. 00일자로 00일을 지연시켜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일 현재까지 지연과태료 00,000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00,650원이 부과되어 총 00,650원 체납되어 있으며,
- 201○. 0. 00일 체납자 징수독려 등으로 운전자 임○○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0,320원을 포함하여 00,320원이 체납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등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직원 ㉠㉠㉠의 부의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한 바, 201◇. 0월부터 201◇. 0월까지 2개월 동안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전출기간 동안 부양가족수당 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 수질관리과 직원 ■■■의 주민등록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의 장인은 201◇. 0월, 201◇년 0월~00월, 201○. 0월 ~ 201▲. 0월까지 00개월 동안 타지역으로 전출하였고, 장모는 201○. 0월 ~ 201▲. 0월까지 00개월 동안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부양가족수당으로 각각 20,000원씩 00개월동안 총 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며, 정액분은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도권행정과에서는 직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연·병가의 사용으로 출근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 외 0명에게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출근미달일수 매 1일마다 15분의 1을 감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시간외수당 정액분 총 00,040원을 감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 또한 급수과에서는 직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연·병가의 사용으로 출근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 외 0명에게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출근미달일수 매 1일마다 15분의 1을 감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시간외수당 정액분 총000,350원을 감하지 않고 지급하였음.

4.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

- 수도요금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체납처분 담당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소멸시효 도래전에 수도사용자 등을 파악하여 상수도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 2015. 5월 현재 상하수도요금 300만원이상 체납 수용가가 00건 000,713천원으로 다수 발생하였으나, 20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를 하지 않는 등 체납자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

5.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 수도권행정과에서는 각종 공사 계약과 관련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

나,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만료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감사대상기간 중 총 0건의 공사에 대하여 만료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 급수과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000건 중 000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200◇년 하반기 상수도 ■■■■■복구공사 등 0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였으며, 201△년부터 총 00건의 하자기간 만료되는 공사 중 00건의 공사에 대하여 만료검사를 미실시하였으며,
- 수질관리과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00건 중 00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정수장 사무실 보수공사 등 0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였으며, 201◇년부터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0건의 공사에 대하여 만료검사를 미실시하였음.

6. 계량기검침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검침원의 협약해지 시에는 제반서류 및 각 세대 점검사항을 후임자로 선정된 자에게 후임자가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침 동선 및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수용가를 방문하여 검침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침원증을 발급·교부하고 검침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수도행정과에서는 2013년에 완산구 00명, 덕진구 00명, 2014년에 완산구 00명, 덕진구 00명의 검침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검침업무 인계인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검침원증을 발급하지 않고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상수도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 수도행정과에서는 매월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전입, 전출, 사망, 중지등 변동사유를 확인하여 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201○. 0 ~ 00월 사이에 완산구 관내 국민기초 수급중지자 ○○○○ 세대

에 대하여 월 0,040원씩 00개월간 금 00,400원을 과다 감면해 주었고, 201□. 0 ~ 0월 사이에는 국민기초 수급자인 ■■■■ 세대가 전출하였는데 월 0,040원씩 0개월간 금00,060을 과다 감면해 준 사실이 있음.

8. 계량기 민원시험 처리에 관한 사항

- 급수과에서는 2013년 ~ 2015년에 계량기민원을 시험처리 하면서 2013년에 000건에 수수료 금000,000원을 부과하고, 2014년에 000건에 수수료 금000,000원을 부과, 2015년 감사일 현재 00건에 금000,000원을 부과하면서,
- 시험 수수료 징수대장(별지제32호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워스2000(상·하수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전산으로만 징수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음.

9. 공무원 복무관련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공무원 관리규정 제28조(결근 및 지참)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일수를 소속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전주시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주시지부의 단체협약서 45조 (병가)제4항에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사용은 연 5일까지로 하며, 진료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수도행정과, 급수과, 하수과에서는 수도행정과 ●●● 외 0명이 2013년 ~ 2014년도까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하였고, 출근 후 지체없이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에도 총 00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0. 수입금 결의에 관한 사항

- 수도행정과에서는 2013년도에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해지하고 2014년도에 신규계좌개설을 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같은 통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2015년 2월에 해지한 사실이 있으며,

- 201◇년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상반기 이자발생 분 금00,060원은 201◇년 0월 0일에 징수결의 하여 세입조치 하였으나, 하반기 이자발생 분 금00,090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음.

11.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에 대한 품의를 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 201◇. 0. 00.부터 201○. 0. 0.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0건 0,000,600원을 집행하면서, 지출원인행위(지출)를 한 후에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등 신용카드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2.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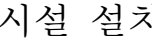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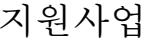
- 급수과에서는 201○년 00월 00일 ▼▼▼ ▼▼▼의 사무용 의자를 0개 금000,000원에 구입, 사무실 업무용 스캐너 0대를 금000,200원에 구입, 누수센터 전기난로 ◇개, 가스난로 ◇개를 금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또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를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각각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구입한 사실이 있음.

13.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수도행정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해야 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01◇.00.00.에는 ●●●●●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00.에는 맑은물사업소 ①①①①에 따른 ●●● 중식제공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0.00부터 '1▲.0.0.까지 총0회에 걸쳐 부서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사용해야 할 시책업무추진비를 현장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무직을 위로 격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14. 주민번호수집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음에도,
-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수질관리과, 하수과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의 예외적 처리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모집,  위원회  모집,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시 지원 신청서 및 응모원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있음.

15. 위원회회의록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기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급수과에서는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생산된 회의록을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는 등 기록물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6. 개량공사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급수과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사항 정산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가 미제출 되었음에도 정산검사 실시 결과 적정의견으로 종결 처리하였고,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고 통장은 비법인일 경우 단체명(공동주택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보조금 지원 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였으며,

- 또한 수립한 ■■■■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로 지원금 신청서등과 함께 정산보고서,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이 완료된 후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및 전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실적보고)를 위배하고 있음.

17.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수질관리과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 연임여부를 결정 후 (재) 위촉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최초 위촉일로부터 201○.0.00.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모집 및 신규 위촉계획을 수립하기 까지 임기가 만료된 ○○○○○ 등 0명에 대해 (재)위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 외 등 0명이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8. 배수관 포설 및 갯생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배수관 포설공사의 굴착 폭 등은 도로복구가 완료되면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검측자료 등을 정리 보관하여야 함에도 굴착폭의 검측자료가 부실하고, 현장여건과 시공사진, 사용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 0.0m가 부족한 0.0m로 시공되어 토공(터파기, 사토,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포장공(기층,표층포장)의 부족 시공량과 도로 절단을 0면으로 설계 반영 하였으나 0면만 절단하였고 갯생공사에서 당초 작업구가 3.0×4.0 크기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었는데 실제로는 0.0×0.0로 시공되어 토공량, 보조기층, 포장 등이 부족 시공되는 등 이에 대한 0,000천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 되는 등 공사비가 과다 지출됨

19. 상수도 급수공사 연간단가계약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의 터파기 및 보조기층 포설 등은 도로복구가

완료되면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검측자료 등을 정리 보관하여야 함에도 터파기,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의 검측자료가 부실하고, 현장여건과 시공사진, 사용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0개소가 미시공 되었고, 야간작업 시공 사진을 확인한 결과 야간에 작업을 해야 할 공정이 주간에 부분적으로 시공하였는데도 야간으로 시공한 것으로 되어 부족 시공량에 대한 0,000천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 되는 등 공사비가 과다 지출 되었으며,

- 연간단가계약 작업지시를 각 사업의 담당 공무원에 따라 작업지시 방법이 상이하고, 작업지시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나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서를 수령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현장에 작업지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작업지시에 따라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공사특성상 작업지시는 작업 방법을 인력과 기계, 주간과 야간으로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함에도, 작업위치나 면적, 길이만 표기하고 계약금액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작업방법(인력,기계,주간,야간 등)을 불명확하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으며,
- 작업지시 과정에서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준공시 위치도 및 사진, 도면 없이 준공조서만 작성한 후 준공처리하여 공사 내역 확인 불분명과 하자곤란 등의 발생 우려 등 관련 업무 추진하고 있음.

20.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3)」 제34조(품질시험기준)별표1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m³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슬럼프 시험 등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00.00.부터 201◇.00.00.까지 맑은물공급사업 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및 유량계설기초, 제수변기초, 관보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총 000회의 레미콘을 타설하였으나, 00회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000회는 미 실시한 사실하는 등 품질관리시험에 소홀함.

21. 전설공사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공사(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현수막, PE드럼웬스 등 금액 정산하지 않고 0,000,000원을 과다 지출 하였고,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에서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는 가능하지만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는 불가하며, 작업 현장이 굴삭기 운전자의 가시선 간섭이 없고 외부간섭요인이 없어 결과적으로 신호자의 인건비 0,000,000원을 적정하지 않게 지급함

22. 상수도 수압시험 실시 조치에 관한 사항

- 2013년도 맑은물사업소 정기종합감사에서 상수도 관로 매설 후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수압시험규정에 의거 수압시험을 실시를 설계서에 반영 추진토록 처분지시 하였으나,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3년 감사 이후 발주한 우아동 (구)역전파출소 앞 배수관 포설공사 등 00개 설계서에 수압시험을 미반영 하는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함.

23. 전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관련

- 2015 상수도 ▲▲▲▲▲ 및 ■■■■■ 통합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0건 용역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출하면서 용역업무범위에 포함된 인쇄비 000,000원을 중복·과다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

24.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하며,
- 00건의 설계변경 중 00건은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통보 받고 설계변경 검토보고를 하였으나 실정보고 승인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0건의 공사는 시공사의 실정보고 등 현장상태에 대한 아무런 서류도 통지받지 아니 하는 등 근거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감독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설계변경 검토보고서”에 의거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등 설계변경 및 공사감독을 소홀함.

25. 건축물 미등기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소유권의 보존과 변경사항에 대해 관공서의 촉탁에 의거 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등기법 제112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에도,
- 급수과에서는 ▼▼▼▼▼ 외 0건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동산 등기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26. 하수처리장 포리머 저장탱크 교체 공사에 관한 사항

- 포리머 저장탱크 제작물량 산출시 스텐이레스강판은 재료할증률을 10%를 적용하여 0.00톤을 적용하여야 하나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0.00톤을 계상한 결과, 공사비 금0,000천원 정도가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

27. 전주하수처리장 3단계 탈수기동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 전주하수처리장 3단계 탈수기동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가설공사 중 강관비계다리 27m², 낙하물 방지방 98m², 비계주위 보호막설 220m²가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현장에 설치되지 않았으면 이에 대한 공사금액 금0,000천원정도를 설계변경 하여 감액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28. 급수공사 보험료 등 미정산에 관한 사항

-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체결시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금0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금000,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00,000원, 산업안전보건비 금0,000,000원 등 총 0,000,000원 정도에 대해 납부확인 및 정산없이 과다 집행함.

29.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보건·위생 안전을 위하여 지하수

준공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하수 사용용도에 따라 2~3년 주기(음용수 2년, 생활·공업·농업용수 3년)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 하수과에서는 수질검사기일이 경과한 덕진구 □□동 000-0호 김◆◆ 외 000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30.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에 관한 사항

- 진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 우오수관 분리공사를 시행하면서 ㉠㉠ 마을, ■■■마을, ㉠㉠마을 및 ●● 마을 총 000세대의 개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폐쇄하였으면 관할 덕진구청에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31.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건에 관한 사항

- ●●●●●지구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시 반영된 상수도 관 00개소는 굴착결과 오수관로와 간섭되지 않아 이설하지 않았고, 우수관 000M는 상태가 양호하여 개보수 않았으며, 이동식 축중기 계측 000회를 실시하지 않음.
-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맨홀 기초콘크리트는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기초 콘크리트 000m³와 거푸집 0,000m²를 감액 설계변경 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함.

32. △△정수장 침전지 관련공사 산업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

- △△정수장 침전지 내부개량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안전관리비 000,000원(제경비 포함)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정산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33. ■■■■ △△△ 확장교체사업(0차분)에 관한 사항

- ■■■■ △△△ 확장교체사업(0차분)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 △△△ 확장교체사업(0차분)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포장 □□설치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비 0,000,000원을 설계변경 하여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0원(제경비 포함)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총 0,000,000원을 설계변경 또는 정산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34. ■■■■ △△△ 확장교체사업(0차분)에 관한 사항

- ■■■■ △△△ 확장교체사업(0차분)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진기지 0개소(규격:10m*4m, 띠장:상하 2단, L=112m)중에서 하부띠장 미설치(L=28m*2개소=56m) 및 도달기지 0개소(규격:4m*4m, 띠장:상하 2단, L=128m)중에서 하부띠장 미설치(L=16m*4개소=64m) 하였고, 추진기지 바닥 유로폼 미설치 A=11m²(당초:40m², 변경:29m²)하였는데도 시공비 0,000,000원을 설계변경하지 않았으며,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00,000,000원(제경비 포함)을 정산감액하지 않는 등 총 00,000,000원을 설계변경 또는 정산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우수사례

1. 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가’ 등급 선정

□ 평가개요

- 법 적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 평 가 대 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330개
 - ※ 전라북도 평가 : 15개(상수도 9개, 하수도 5개, 시설관리공단)
- 평 가 지 표 : 리더쉽/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평 가 기 관 : 전북발전연구원
- 평 가 방 법 : 서면평가, 현장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 추진실적

- 평 가 결 과 : 전주시 “가” 등급 최고 등급 평가
- 인 센 티 브 :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 직 원 장 관 표 창 :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 보도자료

전북일보 2014년 12월 04일 목요일 007면 사회 전주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우수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소장 고연기)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상수도부문)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전국 328개 상수도 공기업을 평가한 결과,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리더쉽·전략·경영성과·정책수준 등 모두 4개 지표에서 고 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맑은물사업소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우수율 향상 및 선진급수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여왔다. 한편 맑은물사업소는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소에 대한 재정지원금 1억원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쓸 계획이다. 최영국기자 psy2351@	전북매일신문 2014년 12월 04일 목요일 005면 종합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공기업경영평가 우수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소장 고연기)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328개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맑은물사업소는 이번 평가에서 상수도분야 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으며 하수도부문에서도 나 등급으로 전라북도에 서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리더쉽·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의 4개 지표를 가지고 2013년도 1년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그동안 맑은물사업소는 수도요금 현실화로 상수도경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지속 추진해왔고,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으로 우수율 향상 및 선진 급수체계 등을 구축해왔다. 이번에 제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1억원은 복지시설 등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낙현 기자
---	--

2.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찬과 표창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직무연찬과 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실시로 업무의 유기적 공유 및 자긍심 고취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 개 요

- 일 시 : 2014. 12. 23.(화) 17:30 ~ 20:00
- 장 소 : 오펠리스 3층 피지홀
- 참석대상 : 120명 정도 (사업소 전직원)
- 내 용
 - 사업소 주요 현안업무 직무연찬
 -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효율적 징수방안, • 수도관 파열에 따른 대응방안
 -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 세수 확충방안
 - 우수공무원 표창
 - 훈격 : 시장(상수도 3명, 하수도 1명)

□ 기대효과

-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사례중심의 발표를 통하여 전직원이 업무를 공유하는 계기
- 최초 자체 표창제도 실시로 직원 내부만족을 통한 자긍심 고취로 조직활성화

3. 맑은물공급사업 현장 사전점검 및 기동처리반 운영

□ 추진배경

-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시민보다 한발 앞서 현장을 점검하고 파악하여 시민불편 사전 예방

□ 맑은물공급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03 ~ 2016. 12
- 사업대상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업비 : 1,612억원
- 사업량 : 블록정비 및 고립 128개소, 통합시스템 1식 등

□ 현장 사전민원점검반 및 기동 처리반 운영

- 운영기간 : 2014.01.01 ~ 12.31.
- 운영인원 : 5개팀 15명
- 처리내용

구 분	현장 사전민원점검반 (맑은물사업소)	기동 처리반 (시공사)
운영인원	1개팀 3명	4개팀 12명
점검방법	○ 1일 2회이상 현장 순찰점검 - 지적사항 기동처리반에 통보	○ 점검반 통보 점검내용 처리
처리내용	○ 현장주변 사전 홍보사항 점검 ○ 주민통행 불편 사항 예측 ○ 현장 점검후 단순사항 즉시처리 - 도로침하, 단차구간복구 - 도로누수구간 긴급조치 - 교통통제구간 통행안내	○ 점검반 지적사항 처리 ○ 콜센타 접수 민원 처리 ○ 민원처리 2일이내 처리 - 계량기실, 앵글밸브 누수처리 - 급수불출, 수압저하, 녹물발생조치 - 제수변실, 도로누수 복구 - 옥내누수 확인및처리(안내) - 단수에 따른 급수차량 운행

4. 수도사업자 운영관리실태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평가 개요

- 목 적 :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영개선 및 대 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
 - ※ 수도법 제23조의 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환경부 훈령 제1096호)
- 평가대상 및 주기 : 일반 수도사업자, 매년 실시
- 평가주체 : 환경부장관 및 새만금 지방환경청장
 - ※ 환경부장관은 평가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전문가 풀 구성 및 최종 평가 수행, 지방환경관서는 세부 평가계획 수립,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 평가단 구성 : 환경·회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 (평가대상) 수도사업자와 K-water(6개 지역본부)를 총인구 기준으로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
- 평가분야 및 항목 : 총 5개분야 총 17개 항목
 - (시설·관리) 정수시설 운영 적정성, 수도시설 유지 및 개선실적 등 6개항목(38점)
 - (수질관리) 수질검사 및 측정지점 관리, 먹는물 수질기준 2개항목(22점)
 -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홍보, 위기대응 능력 정도 등 3개항목 (16점)
 - (경영 및 운영) 정수장 인력배치, 수도요금 현실화, 유수율 개선 등 4개항목(16점)
 - (기타 자체개선노력) 자체개선노력 및 정부 정책순응도 2개항목(8점)

□ 평가 결과 : 최우수 기관

◆ 정수시설 운영 적정성 및 수질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인센티브 : 포상금 20백만원, 인증서 수여 및 대국민 공개(신문, 홈페이지 등)

구 분	I 그룹 (특·광역시)	II그룹 (30만이상 市)	III그룹 (30만미만 市)	IV그룹 (5만이상 郡)	V 그룹 (5만미만 郡)	VI 그룹 (광역시·군·수)	VI 그룹 (K-Water)
최 우수 (포상금액)	대구광역시 (20백만원)	전주시 (20백만원)	광양시 (20백만원)	거창군 (20백만원)	함양군 (20백만원)	논산시 (20백만원)	경남권 (10백만원)
우 수 (포상금액)	-	안산시 (10백만원)	남원시 (10백만원)	양평군 (10백만원)	영월군 (10백만원)	칠곡군 (10백만원)	-

5. 2015 최상위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선정

□ 추진목적

-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전국 106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분석능력 점검, 함양의 목적으로 매년 정도관리(Analytical Quality Control)제 실시

□ 개 요

- 국가공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현황
 -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33호』 지정 - 2000. 7. 25
 - 검사범위 : 모든 먹는물, 상수원수, 먹는샘물, 각종 지하수 등
- 기 간 : 2015. 2. 26. ~ 3. 31.
- 법적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시행령
- 평가내용
 - 22개 항목 분석력(오차율, 분석근거 자료)
 - 기술인력 구성현황 및 시설장비 확보 등

구 분	준휘발성 유기화합물질(4개)	중금속류 (5개)	이온물질류 (7개)	미생물류(3개)	원수(3개)
검 사 항 목 (22)	클로로포름, 벤젠,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납, 비소, 수은, 크롬, 카드뮴	NH ₃ -N, SO ₄ ²⁻ , NO ₃ -N, Cl ⁻ , 불소, (시안, 페놀)	분원성연쇄상구균, 살모넬라, 쉬겔라	BOD, COD, 시안

※ 부적합 판정시 재심사 및 검사기관 업무정지(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평가결과

- 총 23개 항목(먹는물 분야 19개, 원수분야 3개) 분석능력 평가결과 모두 최고 등급 “매우 만족”
- 전국 106개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중 최상위기관 선정
 - 환산점수 100점(분석체계, 장비, 능력 최상위기관)

6. ISO 14001(국제환경 경영체제) 갱신심사 재인증 취득

□ 추진배경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환경규격인 ISO 14001을 취득·운영하면서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운영 강화를 통해 친환경부서로서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취 득 일 : 2002. 12. 26
- 인증범위 : 상수도 업무전반에 관한 국제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인증기관 : 국제인증기관 (본사 : 노르웨이 DNV — 한국지사)

◆ ISO 14001(국제환경경영체제) 개념

- ☞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환경경영시스템으로서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가하는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억제하여 지구촌을 함께 살려나가는 제도

□ 추진사항

- 2014년 ISO 14001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 2014. 3. 17
- ISO 14001 관련 초기진단 실시 및 시정조치 : 2014. 10. 14
-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 ISO 14001 관련 교육 : 2014. 11. 03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추진사항점검 : 2014. 11. 16
- 한국아이에스씨인증원 갱신심사 실시 : 2014. 12. 09
- 국제환경경영 관리체제 구축 및 재인증 취득 : 2014. 12. 19
 -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에 높게 평가

□ 기대효과

- 중요한 환경목표 설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경영 체제구축 및 비용절감(수질, 토양, 폐기물, 대기의 효율적인 환경관리)
- 대외공신력 확보 및 상수도공기기업의 선진화·국제화 촉진
- 단위업무별 지속적인 환경연계성 추진으로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7.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및 서민부담 완화

□ 추진배경

-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화와 서민경제 공공성 양립 지향
- 추진방향
 - 기초수급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 복합수용가 요금부과기준 마련으로 서민부담 완화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확대

□ 추진상황

- 중장기 하수도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14. 3 ~ 6월
- 50만이상 도시비교 하수도사용료 분석 '14. 7 ~ 8월
- 소관 상임 시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 '14. 9월(2회)
- 물가대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심의 '14. 10. 29.
-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입법예고 '14 11. 28 ~ 12 18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15. 1. 14
- 시의회 동의 '15. 2. 4.
- 조례 공포 '15. 2. 27

▣ 전주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주요 개정

- '17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 인상 (현실화율 75%)
 - ※ '17년까지 전주시 하수도사용료 목표 현실화율 90%권고(안행부'14.6월)
- 기초수급자 감면규정, 시행규칙 등 세부기준 마련 (1가구당 3m³ 감면)
- 복합수용가(가정집과 상가등 혼재)사용료기준완화 (월15m³까지가정용적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존 3회 → 변경 4회)

⇒ 지방기업 등 자금운용 환경개선 및 납부편의 제고, 중소기업 규제개선요구 수용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대시민 홍보

- 전주다움. 검침원교육. 사용료고지서 뒷면 홍보, 등
- 현실화 관련 기업간담회(전주페이퍼)
- 안내문 배포(공동주택 등 155,000부)

8. 지하수사용가 검침시스템 개선으로 세입증대

□ 현 황

구 분	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총 계	1042	164	755	75	48

□ 그간추진내용

- 검침곤란 사용가 옥외검침시스템 설치(200개소) : 2013. 8. 30.
 - 효과 : 사용료 284백만원 추가 세입조치(전년도대비 13.7%증)
- 지하수 다량수용가 사용 실태 파악 : 183개소(유량계134/시간계49)
- 지하수 다량사용가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100개소) : 2014. 9.
- 지하수 0톤사용가 일제 실태조사 : 511건

□ 추진성과

- 정확한 검침에 따른 지하수 행정의 신뢰도 향상 : one-stop 업무처리
 - 민원감소 : 검침불신해소, 검침영상확보, 고장 유량계 신속처리
- 시민의 체감만족도 증가 : 고장 유량계 신속 설치 및 교체(104개소)
- 지하수 사용료 증가 : 전년도 대비 105,407천원 증가(4월부과 분)
- 다량수용가(183개소, 목욕탕, 숙박업 등) 지하수사용량 관리·감독 용이

□ 활용방안

- 지하수전의 이력관리 및 전산화 시스템 구축
 -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하수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유량계 설치, 교체, 철거, 폐공, 방치공, 수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
 - 지하수 위치, 시설물 등의 대해 주기적인 조사 및 사진자료 보관
- 공인유량계 전환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
 - 부동 또는 노후화된 시간계 및 사제유량계 교체유도